

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아제르바이잔 공화국(Republic of Azerbaijan)
2. 수도 : 바쿠(Baku, 215만명)
3. 인구·면적 : 980만명(2016.1.), 86,600km²(한반도의 약 4/10)
4. 공용어 : 아제르바이잔어(러시아어 통용)
5. 1인당 GDP : 6,794불(2015년)
6. 독립일 : 1991.8.30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

2. 연혁

- 1995. 11. 12. 헌법 제정(헌법재판소 설치 규정)
- 1998. 7. 14. 헌법재판소 설립

3. 구성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Chairman), 부소장(Deputy Chairman)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(Judge)으로 구성
 - 헌법재판소의 권한행사는 7인 이상의 재판관 임명으로 개시
-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(Milli Majlis)가 선출
- 재판관의 임기는 15년이고, 중임 불가
-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
- 재판관 자격 : 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 국민으로서, 고등법학교육

을 이수하고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

4. 권한

(1) 규범통제

- ① 법률, 대통령령 및 대통령 훈령, 국회규칙, 내각령 및 내각 훈령,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② 대통령령, 내각령,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③ 내각령,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대통령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④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, 대법원 판결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헌법, 법률, 대통령령, 내각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(Nakhichevan 자치정부에서는,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자치정부의 헌법·법률·내각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)
- ⑥ 발효되지 않은 국제협약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, 정부 간 협약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⑦ Nakhichevan 자치정부의 헌법·법률·의회규칙·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, Nakhichevan 자치정부의 법률·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, Nakhichevan 자치정부 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및 내각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

(2)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

(3) 헌법 및 법률의 해석

(4) 헌법소원심판

- (5) 인권 및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법원이 청구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
- (6)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부령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,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권위원(human rights commissioner, 움부즈만)의 청구에 의한 심판
- (7) 헌법이 정한 기타 임무
 - ① 전쟁 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임기의 연장에 관한 결정
 - ② 국회의원 선거소송
 -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소집일자 결정
 - ④ 전쟁 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 임기의 연장에 관한 결정
 - ⑤ 대통령 선거결과 공표
 - ⑥ 대통령 사임 결정
 - ⑦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확정
 - ⑧ 대통령 탄핵소추 및 국회의 대통령 탄핵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서명
 - ⑨ 국회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

5. 심리 및 결정

- 권한 (1) - (3)의 청구는 대통령, 국회, 내각, 대법원, 검찰청, Nakhichevan 자치정부 의회가 하며, 권한 (1)의 청구는 발효 중인 법률, 행정부령,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법원 판결로 인하여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에 한하여 인권위원도 할 수 있음
- 권한 (1)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법률행위와

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채택한 법령에 의하여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권한 (4)의 헌법소원(Complaints)의 형태로 청구

- 권한 (1) ④에 대한 개인과 인권위원의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함
 -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은 경우
 - 적용되지 말아야 할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용된 경우
 -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석되지 못한 경우
-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(Plenum)와 지정재판부(Chamber)로 구성
- 본안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하며, 요건심리는 지정재판부에서 진행. 단, 권한 (7)에 대한 사건은 요건심리 없이 전원재판부에서 즉시 본안심리
- 전원재판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,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권한 행사
- 전원재판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-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확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-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가 결정.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, 이후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이 결의안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어 국회 의결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한 후 재판관 7인 이상의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결의안에서 명하여 대통령 탄핵을 확정
-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, 그 결정의 효력은 아제르바이잔

영토 전역에 미칩

- 주문 또는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결정과 함께 공표
- 법률, 기타 법령, 그 개별조항 및 정부협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며, 국제협약은 발효되지 못함

6. 연락처

- 주 소 : 1 Gencler Meydani
Baku AZ1005
Azerbaijan
- 전화번호 : +994 12 492 42 19
- 팩스번호 : +994 12 492 86 41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onstcourt.gov.az/>

※ 출처 :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웹사이트
아제르바이잔 헌법
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
(2016. 8. 작성)